

 금융위원회	<b>보 도 자 료</b>			
	 금융감독원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

기 관	책 임 자	담 당 자
금융위원회	공정시장과장 김연준(02-2100-2680)	김지웅 사무관(2682)
	자본시장조사단장 최용호(02-2100-2601)	김민석 사무관(2518)
	자산운용과장 고상범(02-2100-2660)	홍연제 사무관(2663)
금융감독원	조사기획국장 김충우(02-3145-5550)	김봉한 부국장(5582)
	기업공시국장 김태성(02-3145-8100)	이 석 팀 장(8482)
	공시심사실장 김진국(02-3145-8420)	박재홍 부국장(8422)
	자산운용감독국장 박봉호(02-3145-6700)	최창보 팀 장(6711)
	자산운용검사국장 최원우(02-3145-7690)	박용호 부국장(7620)
한국거래소	시장감시본부장보 양태영(02-3774-9012)	이승범 부 장(9020)

**제 목 :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「불법·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」을 추진하겠습니다.**

- ◆ **손병두 부위원장은 10.19.(월) 「집중대응단」 첫 회의(Kick-off)를 개최하고 「증권시장 불법·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」을 발표**
  -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·불건전행위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하여,
  - 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,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제도의 미비점 개선·보완 추진
- ◆ **종합대책 주요내용**
  - ① 「예방 → 조사 → 처벌」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
    - 각종 테마주 및 공모도 금지기간 중 불법행위 집중대응
    - 집중신고기간 운영(20.10.19~21.3.31) 및 포상금 확대지급(최대 20억원)
  - ② 무자본 M&A, 전환사채,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 집중점검
    - 불공정거래와의 연계 가능성, 관련 법규 위반여부 등 집중점검
  - ③ 불법·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
    -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(최대 부당이득의 2배) 전면 도입
    - 무자본 M&A 공시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인수자금 공시 강화
    - 사모 전환사채 사전공시 강화 및 최대주주 콜옵션 한도 제한
    - 유사투자자문업자 임원변경시 보고의무 강화 등

## 1. 회의 개요

- 금융위원회는 금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「증권시장 불법·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\*」 첫 회의(Kick-off)를 개최하고, 「증권시장 불법·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」을 발표하였습니다.

\*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, 총괄간사 증선위 상임위원, 금융위·금감원·거래소 담당자

### < 회의 개요 >

- ◆ 일시/ 장소 : '20.10.19.(월) 14:00 ~ 15:00 / 금융위 대회의실(16층)
- ◆ 참석 : (금융위) 부위원장, 증선위 상임위원, 자본시장정책관  
(금감원)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, (거래소) 시장감시위원장,  
(업계·전문가) 금투협, 김필규 박사, 성희활 교수, 안수현 교수

## 2. 부위원장 모두 발언

☞ 별첨 : 부위원장 모두 발언

- 손병두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의 **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\***되면서 불법·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**상황**이라고 지적하면서

\* 투자자 예탁금: (3월 초) 33.2조원 → (8월 말) 60.5조원  
증권 활동계좌수: (3월 초) 2,993만개 → (8월 말) 3,310만개

-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하고,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
- 먼저, 손 부위원장은 최근 증권시장의 상황을 점검하면서,

① 코로나19, 언택트 등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위협성과 연장된 공매도 금지기간(~21.3.15.) 중 불법행위 우려가 있고,

②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사건이 조직화·복잡화되고 있음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,

\* 거래소(심리)→자조단·금감원(조사)→증선위(고발·통보)→검찰(수사·기소)→법원(판결)  
다수 기관을 거쳐 처리됨에 따라 평균 2~3년의 장기간 소요

③ 무자본 M&A, 전환사채, 유사투자자문업 등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해 적기에 집중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.

□ 손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융위·금감원·거래소가 참여하는 「집중대응단」을 조직하고, 「불법·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**① 「예방→조사→처벌」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**을 위하여,

-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,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\* 등을 통해 기관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,

\* 현재는 거래소, 금융위, 금감원이 각각 별도 시스템 운영중

- 반복적 위반행위자, 불공정거래 연루 금투업자 및 임직원에게 대해 가중된 제재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.

**②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**을 실시하여,

- 무자본 M&A와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, 불공정거래와의 연관성 등을 점검하여 조직적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,

-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허위·과장광고, 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.

**③ 불법·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**을 함께 추진하여,

-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,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 강화\* 등을 통해 무자본 M&A 감독을 강화하며,

\* 차입금 관련 정보(차입처, 차입기간, 주식 등 담보제공 여부 등)를 상세 기재

-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 의무화\* 등을 통해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,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도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.

\* (현행) 납입기일 하루 전 또는 당일 공시→(개선) 납입기일 1주일 전 공시

- 아울러,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\*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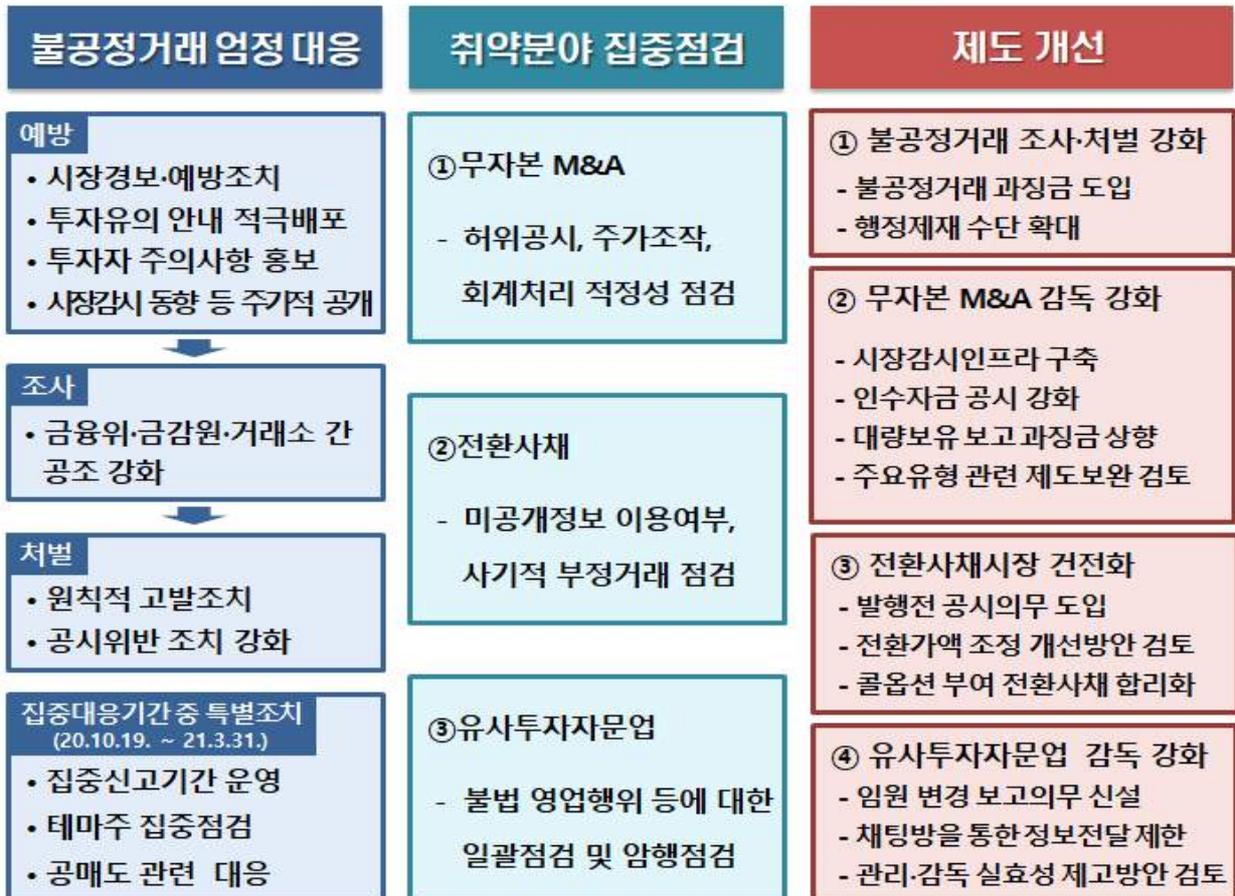
\* (예) 자본시장 참여 제한, 금융거래 제한,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등

### 3. 「증권시장 불법·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」 주요내용

#### < 기본 방향 >

- ① 불공정거래 「예방→조사→처벌」의 각 단계별로 관계기관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엄정 처벌
- ② 증권시장 내 각종 불법·불건전행위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하여 집중점검 실시
- ③ 불법·불건전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추진

### 증권시장의 건전한 성장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



## 1 「예방 → 조사 → 처벌」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

- **(예방)** 불공정거래 우려종목에 대하여 신속한 시장경보·예방조치 등을 실시하고,
  -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 주기적 공개, 투자자 주의사항 홍보(SNS, HTS 등) 등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.
- **(조사)**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\*을 구축하는 등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.
  - \* 사건진행, 전력자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거래소 간 시스템을 연계. 활용결과를 토대로 금융위·원·거래소 간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검토
- **(처벌)** ①반복적 위반행위자 및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중하고, ②불공정거래 연관 공시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.
  - \* 예시 : ① (현행) 기관경고, 직무정지(3개월) → (강화) 업무정지, 직무정지(6개월)  
② 과징금을 가중하여 부과하고 검찰 고발·통보와 병과
- **(테마주·공매도)** 집중대응기간을 설정('20.10월~'21.3월)하여 각종 테마주 및 공매도 관련 불법·불건전거래에 집중대응하겠습니다.
  -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, 인지된 혐의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.

### <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 운영방안 >

- (신고기간 및 기관) '20.10.19~'21.3.31 (\* 필요시 연장)
  - ①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(☎1332,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'증권 불공정거래신고' 메뉴 접속)
  - ② 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(☎1577-3360, www.stockwatch.krx.co.kr)
- (포상금) 신고내용의 정확성 및 중요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집중 신고기간 중 신고건은 포상금 확대 지급(최대 20억원)

## ②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

- **(무자본 M&A)** 무자본인수→자금조달·사용→차익실현 등 단계별로 허위공시, 회계부정,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.

### 관련 사례

# 甲은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상장회사 A社를 무자본으로 인수하여, 자금을 횡령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한편, 바이오산업 진출 관련 허위·과장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부당이득을 취득

- **(전환사채)**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, 부정거래 가능성 등을 점검하겠습니다.

### 관련 사례

# A社는 최대주주 甲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고, 악재성 루머를 유포해 주가하락을 유도하고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. 이후 甲은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취득하고, 루머해소 후 주가가 상승하면 전환권을 행사해 지분을 늘리고 전환차익 취득함

- **(유사투자자문업)** 일괄점검 및 암행점검 등을 실시하여 무인가·무등록 영업\*, 허위·과장광고, 보고의무 위반 등을 점검하겠습니다.

\* 유사투자자문업(신고대상) 범위를 벗어나 인가·등록이 필요한 영업을 하는 경우 (예: 1:1 투자자문 제공, 회원 증권계좌를 전달받아 매매 등)

### 관련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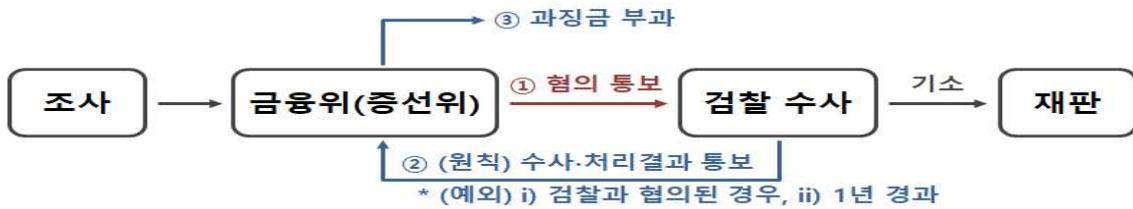
# 유사투자자문업자인 A社는 회원들에게 VIP 회원으로 등록하면 고수익 종목을 추천해 준다고 속여 고액의 수수료를 편취하였으며, 동사의 임원 丁은 회원들에게 종목을 추천할 경우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한다는 점을 이용하여, 추천 前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추천 後 가격이 오르자 매도하여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

### 3 불법·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

- **(불공정거래)**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(미공개중요 정보 이용, 시세조종, 부정거래)에 대하여 과징금을 전면 도입\*하고,

\* 국회(윤관석 정무위원장)와 정부(금융위·법무부·검찰)간 사전협의를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발의('20.9.15. 윤관석의원 대표발의)

<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절차 >



-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\*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(연구용역 진행중)을 검토하겠습니다.

\* (예) 자본시장 참여 제한, 금융거래 제한,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등

- **자본시장 참여 제한:** 증권법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증권 및 파생상품 매매 등 금지 (독일 최대 2년, 홍콩 최대 5년, 캐나다 최대 영구)
- **금융거래 제한:** 미국 SEC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금융자사 등의 처분·사용·이전 제한
- **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:** 미국 SEC는 증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투자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지명령 가능

- **(무자본 M&A)** 무자본 M&A 모니터링 시스템\*을 구축하는 한편,

\* DART 검토시스템에 무자본 M&A 추정기업(잡은 최대주주 변경, 사모 등을 통한 대규모 자본조달 등) 검색 및 모니터링 기능 추가

-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\*하고, 대량보유 보고의무(5%룰)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실화\*\*하겠습니다.

\* 차입금인 경우 차입처, 차입기간, 주식 등 담보제공 여부 등을 상세기재토록 변경

\*\*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, 감경 축소 등을 통해 100만원 이하 소액 부과문제 개선

- **(전환사채)**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를 의무화\*하여 기존 주주등이 전환사채 발행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,
  - \* (현행) 납입기일 하루 전 또는 당일 공시→(개선) 납입기일 1주일 전 공시
  -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공시\* 및 행사한도\*\*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.
    - \* 콜옵션 행사자 확정시 세부내역(행사자, 행사금액, 전환되는 주식수 등) 공시 의무화
    - \*\*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現 지분율 한도로 제한
  - 중장기적으로 관행적·반복적으로 과도한 수준까지 전환가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 조정 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\*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.
    - \* (예) 전환가액 조정시 공시 의무화(현행 자율신고), 조정조건 명문화, 조정횟수 제한 등
- **(유사투자자문업)** 임원 변경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,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서식을 개선\*하겠습니다.
  - \*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 발생우려가 높은 매체(인터넷 방송, 카페·블로그 등) 사용시 개별적인 투자자문 방지수단을 기재
  - 아울러, TF 운영을 통해 관리·감독 실효성 제고방안\*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.
    - \* (예)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강화, 현행 신고제도 개편(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한정 등)

## 5. 향후 계획

-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, 취약분야 집중점검,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TF로 구성되며,
- 오늘부터 '21.3월말까지 운영되며,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.

## 증권시장 불법·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운영체계



< 별첨 1 > 부위원장 모두 발언

< 별첨 2 > 「증권시장 불법·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」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